

[별표 9] <개정 1996.1.20, 1996.2.17, 1996.12.24, 1998.2.17, 1998.6.10, 1999.2.13, 2000.2.10>

특수업무수당 지급구분표

구 분	지 급 대 상	지 급 방 법	지 급 액
1. 기술수당	일반직공무원(기능직은 제외한다)중 사법행정사무직군의 전산직렬과 기술심리, 시설·공업 및 보건직군에 속하는 직렬의 공무원		5급이상 : 월25,000원 이하 6급 및 7급 : 월15,000원이하 8급이하 : 월10,000원 이하 <가산금> 기술수당 지급대상자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·기능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기술사는 월60,000원이하, 기능장·기사는 월30,000원이하, 산업기사는 월20,000원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.
2. 교재연구수당	1) 사법연수원 및 법원 공무원교육원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공무원 (사법연수원및 법원공무원교육원의 교수를 제외한다)	지급범위는 법원 행정처장이정한다.	5급이상 : 월60,000원 이하 6급이하 : 월40,000원 이하
	2) 사법연수원의 원장, 부원장 및 교수와 법원 공무원교육원의 원장 및 교수		월 110,000원
3. 합숙생활지도수당	사법연수원 및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정규근무시간외에 피교육자의 합숙생활지도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	지급범위 및 지급 방법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.	1일밤 5,000원
4. 자동차운전정비업	자동차(중기를 포함한다)운전 또는 정비업무		가. 자동차정비(중기정비를 포함한다)업

무수당	에 종사하는 공무원		<p>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:</p> <p>월20,000원이하</p> <p>나. 가 이외의 기능직 공무원인 운전원 : 월40,000원이하</p>
5. 재판수당	법관		<p>고등법원·특허법원부장 판사이상: 월150,000원</p> <p>법조경력 10년이상인 판사, 지방법원·가정법 원·행정법원부장판사: 월100,000원</p> <p>법조경력 10년미만인 판사, 예비판사: 월80, 000원</p> <p>(법조경력이라 함은 법 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제2항제 1호,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력중 판사 임용시 호봉획정에 통 산된 기간과 제4항에 의하여 승급기간에 인 정된 기간을 포함한 경 력을 말한다.)</p>
6. 민원업무 수당	각급법원 또는 국가기관 에 파견되어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	지급범위는 법원 행정처장이 기획 예산처장관과 협 의하여정한다	월30,000원이하
7. 재판업무 수당	기술심리관과 각급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 파견 되어 재판업무에 종사하 는 5급~ 9급 공무원		<p>기술심리관:월50,000원 이하</p> <p>5급~9급 공무원: 월40,000원 이하</p>
8. 전산업무 수당	전산업무(천·검공및 자 료입출력업무를 제외한 다)를 직접 담당하는 공 무원	지급대상중 전산 직렬공무원과 전 산요원인 별정직 공무원이 아닌 공	<p>3년이상 근무자: 월50,000원이하</p> <p>3년미만 1년이상 근무 자 :</p>

		무원은 법원행정처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	월30,000원이하 1년미만 근무자 : 월20,000원이하 이 경우 근무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직접 전산 업무를 담당할 연수를 말한다.
9. 의료업무수당	간호사로서 의료법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당해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		월50,000원이하
10. 사서수당	법원 사서직공무원	지급범위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.	5급이상 : 월30,000원이하 6급이하 : 월20,000원이하
11. 전기위험물 및 도시가스안전관리담당수당	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담당자 및 보조원으로 선임된 자  소방법에 의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하여 도시가스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		전기안전관리담당자 : 월30,000원이하 전기안전관리보조원 : 월15,000원이하 월10,000원이하
12. 등기업무수당	지방법원, 지방법원 지원, 등기소 및 전환사업소에서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 등기소장이나 과장이 아닌 5급, 6급이하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		월50,000원